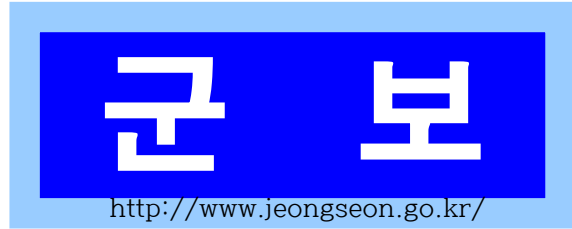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389호 2016. 6. 9. (목)

【조 례】

- 정선군 조례 제2499호 정선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 정선군 조례 제2500호 정선군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3
- 정선군 조례 제2501호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 6
- 정선군 조례 제2502호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1
- 정선군 조례 제2503호 정선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14
- 정선군 조례 제2504호 정선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 19
- 정선군 조례 제2505호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0
- 정선군 조례 제2506호 정선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2
- 정선군 조례 제2507호 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 24
- 정선군 조례 제2508호 정선군 휴양단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6
- 정선군 조례 제2509호 정선군아라리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8
- 정선군 조례 제2510호 정선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30
- 정선군 조례 제2511호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34

【규 칙】

- 정선군 규칙 제1269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 53
- 정선군 규칙 제1270호 정선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54

조 례

제229회 정선군의회(2016. 5. 20.)에서 의결된 정선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6월 9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499호

정선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본문 중 “7월” 을 “6월”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정례회 집회일)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토요일인 때에는 그 다음 다음날에 집회한다.	제4조(정례회 집회일) ----- -----. ----- -----.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10월 10일에 집회한다.	1. ----- 6월 ----- --.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개 정 이 유

○ 「지방재정법」 제8조에 의거 출납 폐쇄기한 단축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정례회 집회일이 “6월·7월” 중에서 “5월·6월” 중으로 일부개정됨에 따라 정선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정례회 집회일(안 제4조제1호)
-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6월 10일”로 변경

제229회 정선군의회(2016. 5. 20.)에서 의결된 정선군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6월 9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500호

정선군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의 우호교류 및 자매결연을 통한 국제 및 국내 교류의 내실화를 위하여 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국외 도시 중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우리나라의 시·군·구 이상의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우호교류"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합의 의사를 밝히는 협약서, 의향서, 합의서 등(이하 "합의문"이라 한다)의 체결을 말한다.
3. "자매결연"이란 우호교류를 통해 상호 공동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우호교류 및 자매결연(이하 "결연등"이라 한다) 업무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결연등)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상호 공동발전과 우호협력 증진이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와 결연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결연등을 체결할 경우에는 군과 지속적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 상호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야 한다.

제5조(사전검토) ① 군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결연등을 제의받거나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관계 자료를 수집·비교·분석하여 적정성을 충분

히 검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류여건 등의 검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발전 및 우호증진의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전교류) ① 군수는 결연등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여러 형태의 충분한 교류를 통하여 상호 여건을 조성한다.

②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전검토를 위하여 주민, 지방의회, 학계 및 사회단체, 각급 기관 대표 등을 상호 교환 초청하도록 하여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비교 견학하게 하는 등 사전교류를 할 수 있다.

제7조(의회의 동의) 군수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을 체결 또는 취소·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선군의회를 동의할 수 있다.

제8조(결연등의 체결) ① 결연등은 양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가 참석하여 결연식을 갖고 각각 합의문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결연등을 체결하는 합의문은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상호방문에 따른 체재비는 초청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호혜주의에 따라 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은 우호교류 등 상호 합의를 통하여 충분한 사전 교류 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교류사업 지원) ① 군수는 결연등 체결 후 교류 부진 또는 교류가 두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활동을 지원한다.

② 군수는 결연등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각급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가능한 경비의 지원,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제10조(결연등의 취소 등) 군수는 결연등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에서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교류 두절로 결연등이 유명무실 또는 양 지방자치단체 간의 지속적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읍·면의 결연등) ① 읍·면은 국내 결연등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사항은 제4조부터 제6조 및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른다.

② 읍·면장은 군 관할구역 외의 다른 읍·면·동과 결연등을 체결 또는 취소·해지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체결된 결연 등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 정 이 유

○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국내·외 도시 간 우호교류 및 자매결연의 교류활성화와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정선군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자매결연 주최 및 대상, 결연의 종류 정의(안 제2조)
 - 주최 및 대상: 지방자치법 제2조 (정선군과 시·군·구 이상의 지역)
 - 우호교류 및 자매결연(결연등)
- 결연대상 선정 및 사전 검토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 상호 공동발전과 우호협력 증진이 가능한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 사전 검토
 - (지역여건의 유사성, 우호증진 가능성, 실익의 기대성, 교류의 필요성, 기타 등)
- 의회 동의(안 제7조)
 - 국외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취소·해지 시 사전 의회 동의
- 교류활성화를 위한 지원(안 제9조)
 - 결연 후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 각급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에게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 지원
- 읍·면의 국내 결연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국내 다른 지역 읍·면·동과 결연등 체결, 사전 보고(군수)

제229회 정선군의회(2016. 5. 20.)에서 의결된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6월 9일

정 선 군 수

인

정선군 조례 제2501호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정선군 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감면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한다)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
2.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25로 한다.

제5조(지역특산물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물 생산단지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물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제6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조(정선군 폐광지역 진흥지구에 대한 감면)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 진흥지구 안에서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축·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해당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8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85로 한다.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0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자동계좌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

② 제1항에 따른 부과되는 납세고지서에 도세와 군세가 병기(併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세를 우선 공제하고,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併記)되어 있는 경우에는 목적세를 우선 공제한다.

제3장 보칙

제11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을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3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군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감면

제16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조에 따라 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17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 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 정 이 유

- 지방자치단체별로 감면 규정이 상이하여 행정자치부에서 감면조례 기본안을 통보한 바,
- 기본안과 2015. 12. 29.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부개정 조문을 반영하여 정선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제1장은 총칙으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제2장은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농공단지 대체임주자에 대한 감면,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감면조문을 상위법과 부합하게 규정하였음.(안 제2조부터 안 제10조까지)
- 제3장은 직접사용의 의미, 중복감면 배제 등을 규정하였음.
(안 제11조부터 안 제14조까지)
- 세부담의 형평성 및 지방공공재 사용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최소납부제 규정.(안 제15조)
-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감면을 거주지 시·군·구에서도 처리가능토록 규정함.(안 제16조)

제229회 정선군의회(2016. 5. 20.)에서 의결된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6월 9일

정 선 군 수

인

정선군 조례 제2502호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 할 수 있는 경우) 영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에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항에 따른 군수의 인증을 받은 품질보증 농특산물
2.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제2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공유임야를 산림농업 목적으로 대부할 경우 그 대부요율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1조의 제목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을 “(대부료 등의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가 공유재산을 사용·대부하고자 할 경우 공유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20을 감액할 수 있다.

⑤ 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6항, 제7항에 따라 대부료 및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액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19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 할 수 있는 경우) 영 제13조 제3항제8호 및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에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항에 따른 군수의 인증을 받은 품질보증 농특산물 2.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⑤ (생략)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공유임야를 산림농업 목적으로 대부할 경우 그 대부요율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② (생략)	제31조(대부료등의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③영 제35조제3항에 따라 영 제30조제2항에서 정한 생산·연구시설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30퍼센트 감면할 수	<삭 제>

<u>있다.</u> <신 설> <신 설>	④ 「<u>관광진흥법</u>」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가 공유재산을 사용·대부하고자 할 경우 공유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20을 감액할 수 있다. ⑤ 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6항, 제7항에 따라 대부료 및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액할수 있다.
--	---

개정 이유

○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의 수익계약 대상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의 범위 규정 신설(안 제19조의2)
- 공유임야를 산림농업 목적으로 대부할 경우의 대부요율 규정 신설
(안 제27조제6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삭제에 따라 관련 조문 삭제(안 제31조제3항)
-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액 조항 신설
(안 제31조제4항)
 - 공유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20 감액
-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생산·전시 판매하는 경우 대부료 감액 조항 신설(안 제31조제5항)
 - 대부료 및 사용료의 100분의 30 감액

제229회 정선군의회(2016. 5. 20.)에서 의결된 정선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6월 9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503호

정선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정선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6항에 따라 정선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선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선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3. 「의료급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선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사항
4.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선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협의체의 위원이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른 정선군 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6.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역사회보장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7항에 따라 협의체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생활보장전문위원회: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위원회

2. 사회공헌전문위원회: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제6호, 제7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위원회

3. 노인복지전문위원회: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위원회

② 전문위원회는 협의체의 위원 중에서 전문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적어도 3분의 2는 사회보장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전문위원회는 심의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협의체에 상정하여 처리한다.

제4조(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토한다.

1. 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에 부위원장을 둘 수 있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 중 호선한 1명과 위촉 위원 중 호선한 1명으로 한다.

제5조(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 ①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분과(이하 “실무분과”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④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읍·면지역 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체에 전문가 자문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공개) 군수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이 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경우 그 위원의 명단을 군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협의체(이하 “각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은 각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사망·질병·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

는 경우

제10조(회의 등) ① 각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집한다.

1. 협의체: 연 4회 이상

2. 실무협의체, 읍면협의체 및 실무분과: 연 6회 이상

② 전문위원회 및 실무분과의 회의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각협의체, 전문위원회 및 실무분과(이하 “각협의체 등”이라 한다)가 심의·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공청회 등의 개최) 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각 협의체등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운영세칙) 각협의체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설치·구성 및 운영 중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각 협의체로 보며, 그 위원의 임기는 계속된다.

개 정 이 유

○ 기존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의거 운영되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새로 제정·시행(2015.7.1.)됨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적 근거에 맞게 전부 개정함으로써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확대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조례 제명 변경: 정선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 정선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법적근거 변경: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안 제1조)
- 각 협의체 기능(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안 제2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3조)
 -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안 제4조)
 - 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안 제5조)
- 각 협의체의 위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229회 정선군의회(2016. 5. 20.)에서 의결된 정선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6월 9일

정 선 군 수

인

정선군 조례 제2504호

정선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

정선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 지 이 유

-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설계된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정책과 중복되고,
- 「정선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한 「정선장학회 운영 규정」 개정으로 저소득주민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 가능해 짐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정선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폐지

제229회 정선군의회(2016. 5. 20.)에서 의결된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6월 9일

정 선 군 수

인

정선군 조례 제2505호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2항 전단 중 “영월군”을 “영월군, 보령시, 화순군, 문경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3(입장료 및 사용료의 감면) (생략)	제12조의3(입장료 및 사용료의 감면) (현행과 같음)
② 주민등록상 폐광지역 정선군, 태백시, 삼척시, <u>영월군</u> 거주자는 50퍼센트를 감면한다.(단, 주말, 공휴일은 제외한다)	② ----- ----- <u>영월군, 보령시, 화순군, 문경시</u> -----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개 정 이 유

○ 2016년 2월 23일 폐광지역 7개 시군의회의회장협의회 제4차 정례회에서 협의된 폐광지역 주요관광지 입장료 할인적용 추진 이행을 통한 폐광지역 주민 간 화합과 상생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입장료 및 사용료의 감면(안 제12조의3제2항)
- 당초 주민등록상 폐광지역인 정선군,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4개 시·군 거주자에
서 보령시, 화순군, 문경시 등 3개 시·군 거주자 추가 확대 감면.

제229회 정선군의회(2016. 5. 20.)에서 의결된 정선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6월 9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506호

정선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영월군”을 “영월군, 보령시, 화순군, 문경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시설이용료의 감면) ① (생 략)	제7조(시설이용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 음)
② 폐광지역 주민(정선군, 태백시, 삼척 시, <u>영월군</u> 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 다)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시설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군민은 다음 각 호의 신분증을 관리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② ----- <u>영 월군, 보령시, 화순군, 문경시</u> ----- ----- ----- .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개 정 이 유

○ 2016년 2월 23일 폐광지역 7개 시군의회의회장협의회 제4차 정례회에서 협의된 폐광지역 주요관광지 입장료 할인적용 추진 이행을 통한 폐광지역 주민 간 화합과 상생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시설이용료의 감면(안 제7조제2항)

- 당초 폐광지역 주민인 정선군,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4개 시·군 주민에서 보령시, 화순군, 문경시 등 3개 시·군 주민 추가확대 감면

제229회 정선군의회(2016. 5. 20.)에서 의결된 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6월 9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507호

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1호 중 “영월군”을 “영월군, 보령시, 화순군, 문경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2(감면) ① (생 략)	제7조의2(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해당하는 폐광지역 주민, 명예군민, 투표자, 자매결연도시민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1. 폐광지역 주민: 정선군,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 영월군, 보령시, 화순군, 문경시-----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개 정 이 유

- 2016년 2월 23일 폐광지역 7개 시군의회의회장협의회 제4차 정례회에서 협의된 폐광지역 주요관광지 입장료 할인적용 추진 이행을 통한 폐광지역 주민 간 화합과 상생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안 제7조의2제2항제1호)
- 당초 폐광지역 주민인 정선군,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4개 시·군 주민에서 보령시, 화순군, 문경시 등 3개 시·군 주민 추가확대 감면

제229회 정선군의회(2016. 5. 20.)에서 의결된 정선군 휴양단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6월 9일

정 선 군 수

인

정선군 조례 제2508호

정선군 휴양단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휴양단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영월군”을 “영월군, 보령시, 화순군, 문경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청소비 및 시설이용료의 면제 · 감면) ① (생 략)	제11조(청소비 및 시설이용료의 면제 ·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폐광지역 주민(정선군,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제10조에 따른 청소비 및 시설이용료(산막이용료를 제외한다)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광지역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신분증을 관리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②----- 영월군, 보령시, 화순군, 문경시-----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개 정 이 유

○ 2016년 2월 23일 폐광지역 7개 시군의회의회장협의회 제4차 정례회에서 협의된 폐광지역 주요관광지 입장료 할인적용 추진 이행을 통한 폐광지역 주민 간 화합과 상생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청소비 및 시설이용료의 면제 · 감면(안 제11조제2항)
- 당초 폐광지역 주민인 정선군,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4개 시 · 군 주민에서 보령시, 화순군, 문경시 등 3개 시 · 군 주민 추가확대 감면

제229회 정선군의회(2016. 5. 20.)에서 의결된 정선군아라리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6월 9일

정 선 군 수

인

정선군 조례 제2509호

정선군아라리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아라리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호 중 “영월군을” 을 “영월군, 보령시, 화순군, 문경시를” 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영월군” 을 “영월군, 보령시, 화순군, 문경시”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입장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정선아리랑상품권 소지 없이 입장할 수 있다.	제7조(입장의 특례)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폐광지역(정선군, 태백시, 삼척시, <u>영월군</u> 을 말한다) 소재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교육을 목적으로 단체입장하는 경우	7. ----- <u>영월군, 보령시, 화순군, 문경시</u> 를 ----- ----- -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10. 그 밖에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및 폐광지역 주민(정선군, 태백시, 삼척시, <u>영월군</u> 의 주민을 말한다)	10. ----- ----- ----- <u>영월군, 보령시, 화순군, 문경시</u> -----

개 정 이 유

○ 2016년 2월 23일 폐광지역 7개 시군의회의회장협의회 제4차 정례회에서 협의된 폐광지역 주요관광지 입장료 할인적용 추진 이행을 통한 폐광지역 주민 간 화합과 상생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입장의 특례(안 제7조)

- 당초 폐광지역 주민인 정선군,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4개 시·군 주민에서 보령시, 화순군, 문경시 등 3개 시·군 주민 추가확대

제229회 정선군의회(2016. 5. 20.)에서 의결된 정선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6월 9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510호

정선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정선군 소방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방취약계층”이란 소방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선군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의 노인
7. 그 밖에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정선소방서장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제3조(책무) 군수는 소방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적극 시행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4조(비용지원) 군수는 소방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소방취약계층으로 한다.

② 소방시설 설치 지원범위는 제1항의 지원대상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한정한다.

다.

제6조(지원신청 등) 제5조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필요성·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7조(준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

지 원 대 상 자	성 명		생년월일		세대원수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대상자 구 분	☐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 기 타		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원 시설명						
지원희망시기		년 월 일				
「정선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정선군수 귀하						

제 정 이 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규정한 주택의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유예기간이 2017년 2월 4일 종료되고,
- 초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 소방취약계층에 소방시설을 지원하여 화재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고 초기진압을 통한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 소방취약계층의 정의(안 제2조)
 -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청소년가장세대, 65세 이상 노인
- 소방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예방시책 시행, 비용지원(안 제3조~제4조)
- 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신청 등(안 제5조~제6조)

제229회 정선군의회(2016. 5. 20.)에서 의결된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6월 9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511호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삭제하고, 제6조제2항 중 “제1항”을 “법 제26조”로 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중 “1천제곱미터”를 “3천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천제곱미터”를 “2천제곱미터”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3호를 삭제하고, 제31조제2항 중 “영 별표 20 제2호 및 영 별표 27 제2호 단서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별표 26에서 정하는 지역에 한정한다.”를 “별표 26과 같다.”로 한다.

제51조제1항제16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그 내용에 따라 3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51조제1항제18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그 내용에 따라 3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4조제3항”을 “영 제84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제51조제2항제4호 중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영 제84조제4항”을 “영 제8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4조제5항”을 “영 제84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을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도로 및 상·하수도 등 영 제2조의”를 “도로 및 상·하수도 등”으로, “인정”을 “인정되거나,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중 3-3-2-1부터 3-3-2-3까지의 기반시설의 확보요건에 충족”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결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 80퍼센트 이하

7.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영 제8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2조제3항 중 “영 제84조제6항”을 “영 제84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4조제7항”을 “영 제84조제8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정선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제52조제5항 중 “영 제84조제8항”을 “영 제84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16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 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

내일 것

나.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나.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

- 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
-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
-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

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3조제2항 본문 중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을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4조제3호 중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으로 한다.

제55조제2항 단서 중 “제59조제1항”을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제5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영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이 조례 제31조부터 제50조까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② 영 제93조제5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영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령(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기존 용도

에 따른 영업을 폐업한 이후 기존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분의 1 이상이어야”를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직 위원 중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타 지자체 및 타 위원회와 중복 위촉할 수 없다. 다만, 인력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타 지자체간 2개, 타 위원회 간 5개 이하의 범위에서 중복 위촉할 수 있다.

제60조제1항 중 “회의는”을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로, “이를 소집한다”를 “수시회의를 개최한다”로 한다.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안전 처리기한 등) ①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을 한 경우 재심의를 최초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별표 5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별표 5 제10호가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별표 5 제11호부터 제17호를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로 하고,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3) 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 허가·신고 대상 시설의 건축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건축제한시설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별표 6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별표 6 제9호 중 “별표 3”을 “별표 5”로 한다.

별표 6 제14호 중 “교정 및 군사시설”을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7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별표 7 제14호 중 “교정 및 군사시설”을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10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별표 14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시설을 포함한다)

별표 17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산업생산품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별표 17 제8호가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별표 18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아목·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별표 18 제5호다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8 제10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산업생산품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별표 19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별표 20 제2호, 제3호, 제6호, 제8호,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나목·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농

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등이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시설을 포함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별표 20 제9호가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별표 21 제3호 및 제4호 중 “별표 24” 를 “별표 26” 으로 한다.

별표 21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 다만,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경우나 자연보전권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에 준공되어 운영 중인 공장 또는 제조업소는 제외한다.

별표 22 제1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시설을 포함한다)

별표 23 제1호 중 “사목” 을 “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으로 한다.

별표 24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별표 24 제6호에 “요양병원”을 추가 한다.

별표 24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시설을 포함한다)

별표 24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20 제9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별표 25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법 제26조에 따라 정선군 군관리계획 (이하 "군관리계획"이라 한다)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주민(이해관계자를 포 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5조제2항 및 영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 이 포함된 제안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대상 지역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 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 에 대해서 필요할 경우 위원회에 자문하 여 그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삭 제> ② ----- 법 제26조----- ----- ----- ----- ----.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등) ① (생 략)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 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면적이 <u>1천제곱미터</u>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 <u>3천제곱미터</u> ----- -----

2. 부피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3. ~ 5. (생략)

③ (생략)

제31조(건축제한 건축물) ① 영 제71조·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종류·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2. (생략)

23.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5

② 영 별표 20 제2호 및 영 별표 27 제2호 단서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은 별표 26에서 정하는 지역에 한정한다.

제5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5. (생략)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단서 신설>

17. (생략)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단서 신설>

19. ~ 21. (생략)

2. ----- 2천세제곱미터 -----
--

3. ~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31조(건축제한 건축물) ① -----

-----.

1. ~ 22. (현행과 같음)

<삭제>

② 계획관리지역-----

----- 별표 26과 같다.

제5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

-----.

1. ~ 15. (현행과 같음)

16. -----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그 내용에 따라 3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17. (현행과 같음)

18. -----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그 내용에 따라 3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19. ~ 21. (현행과 같음)

② 영 제84조제3항에 따른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40퍼센트 이하

3. (생략)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60퍼센트 이하

5.·6. (생략)

제52조(건폐율 강화 및 완화) ① 영 제84조 제4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 이용의 과밀화 방지를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구역에 적용할 그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이를 낮출 수 있다.

② 영 제84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3.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 중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에 따른 그

② 영 제84조제4항-----
-----.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3. (현행과 같음)

4. ----- 자연공원-----

5.·6. (현행과 같음)

제52조(건폐율 강화 및 완화) ① 영 제84조 제5항-----

-----.

② 영 제84조제6항-----
-----.

1.·2. (현행과 같음)

3.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것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및 상·하수도 등 영 제2조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0퍼센트 이하

5. (생 략)

<신 설>

<신 설>

- ③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

4. -----

-- 도로 및 상·하수도 등 -----
----- 인정되
거나,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중 3-3-2-1부터 3-3-2-3까지의 기반시설의 확보요건에 충족하는 --

5. (현행과 같음)

6.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결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 80퍼센트 이하

7.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영 제8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 ③ 영 제84조제7항-----

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④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어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경우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2. (생 략)

<신 설>

⑤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 설>

---.

④ 영 제84조제8항-----

-----.

1. 2. (현행과 같음)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정선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⑤ 영 제84조제9항-----

-----.

⑥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16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

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
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
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
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
한다.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
춘 경우

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
터 이하로서 준공당시 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나.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
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
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
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
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
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
우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

나.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
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
가 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
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
정할 것

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 른 식
품안전관리인증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 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 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

제5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임대유기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0조의2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③·④ (생략)

<신설>

제54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 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

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현행과 같음)

②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단서 삭제>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4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8조(구성) ①·② (생 략)

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건축과장이 되고, 그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 3. (생 략)

④ ~ ⑥ (생 략)

<신 설>

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② 영 제93조제5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영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령(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기존 용도에 따른 영업을 폐업한 이후 기존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제58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직 위원 중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

1. ~ 3.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타 지자체 및 타 위원회와 중복 위촉할 수 없다. 다만,

제60조(회의운영) ① <u>회의는</u>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u>이를 소집한다.</u> ② ~ ⑥ (생략) <u><신설></u>	<u>인력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타 지자체간 2개, 타 위원회 간 5개 이하의 범위에서 중복 위촉할 수 있다.</u> 제60조(회의운영) ① <u>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 수시회의를 개최한다.</u>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64조의2(안건 처리기한 등) ① <u>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u> ② <u>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을 한 경우 재심의는 최초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u>
---	---

개 정 이 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반영 및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 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법령에 위임근거 없는 규제 내용을 삭제하여 규제 완화
 -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 제안서의 서류 및 절차 간소화(안 제6조)
- 개발행위허가 시 군계획위원회 자문범위 축소로 규제 완화(안 제28조제2항)
- 자연녹지 및 생산관리지역 내 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역 건폐율 완화
 - 건폐율 20퍼센트 이하 → 30퍼센트 이하(안 제51조제1항)
- 기존공장 건축밀도 및 입지 규제 완화
 -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 사업구역 내 공장 80퍼센트 이하 신설(안 제52조제2항제6호)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 신설(안 제52조제2항제7호)
 - 생산녹지지역내 정선군에서 생산된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의 건폐율 60퍼센트 이하로 완화(안 제52조제4항)
 - 현행 조례에 저촉되는 기존공장의 시설 증설 및 업종변경 규제완화 신설(안 제56조)
 -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용적률 120퍼센트 이하 규정 신설(안 제53조제5항)
 - 군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명문화로 심의 과정의 부패유발요인 차단 신설
 - 위원회 구성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직 위원 중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안 제58조제3항)
 - 군계획위원회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인력부족 시 타 지자체 2개, 타 위원회 간 5개 이하의 범위에서 중복위촉 신설.(안 제58조제7항)
 - 군계획위원회 심의 처리기한을 60일 이내, 반복심의 3회로 제한 등 회의운영방안 개선.(안 제64조의2)
 - 그 밖에 각종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한 조문 및 별표 정비

규 칙

2016년도 제3회 정선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정선군 지방 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6월 9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규칙 제1269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

정선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 지 이 유

- 비위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정한 행정자치부령인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 제정·시행(2015. 11. 19.)됨에 따라 관련 규칙의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정선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폐지

2016년도 제3회 정선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정선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6월 9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규칙 제1270호

정선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정선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 지 이 유

-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설계된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정책과 중복되고,
- 「정선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한 「정선장학회 운영 규정」 개정으로 저소득주민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정선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시행규칙」 폐지.